

역량기반 교육과정개발 및 운영규정

제정 2020.09.21. 개정 2025.12.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혜전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사명과 교육목표를 반영하고 사회 변화 및 산업체 요구에 부응하는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역량기반 창의융합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역량이라 함은 직무역량과 대학핵심역량을 말한다.
- ② “교육과정”이라 함은 학습자의 입학연도를 기준으로 전공과 교양 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교육목표 및 교육내용을 구성하고, 이를 평가하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교육 계획을 말한다.
- ③ “교육과정 편성”이라 함은 학과 단위의 교육과정을 개발, 개편, 변경하는 것을 의미한다.
- ④ “교육과정 개발”은 새로운 전공의 신설 등으로 교육과정을 신규 개발하는 것을 의미한다.
- ⑤ “교육과정 개편”은 산업 및 사회 변화에 따라 주기적으로 또는 필요시 교육과정을 검토하여 개정하는 것을 말한다.
- ⑥ “교육과정 변경”이라 함은 전체 이수체계를 유지하면서 일부 교과목의 과목명 변경, 학점조정, 개설학기 변경, 추가, 삭제 등을 말한다.

제3조(교육과정개발 및 개편)

- ① 역량기반 교육과정 개발은 계열(전공) 및 (학)과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지침」에 의거 계열(전공) 및 (학)과 교육과정개발위원회에서 개발 및 편성하고 교육과정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대학평의회 자문을 거쳐 총장이 확정한다.
- ② 계열(전공) 및 (학)과는 전임교원 외에 산업체 실무전문가가 참여한 교육과정 개발위원회를 구성하여 4차 산업혁명 창의융합 인재양성을 위한 역량기반 교육과정 개발의 방향을 정한다.
- ③ 입학 당시 승인된 교육과정은 졸업 시까지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과목명 변경, 학기 변경 등을 수정할 때에는 교육과정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승인으로 한다.
- ④ 교육과정의 개편 주기는 학년제에 따라 2년제는 2년, 3년제는 3년, 4년제는 4년을 주기로 개발하되 법령의 변경 또는 산업환경 변화 등 대내외의 상황에 따라 그 주기는 변동될 수 있다.
- ⑤ 직업기초 및 교양교육과정 개발은 다음의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반영하고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에 적용한다.
 1. 대·내외적 여건 분석, 학생 요구 분석을 고려한 대학발전계획

2. 직업기초능력과의 연계성
 3. 대학의 핵심역량
- ⑥ 전공교육과정 개발은 다음의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반영하고 정규 교육과정 편성에 적용한다.
1. 대·내외적 여건 분석, 학생 요구 분석을 고려한 대학발전계획
 2. 학과 교육목표, 비전, 인재양성 유형
 3.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혹은 자체직무분석에 따라 도출된 직무역량
 4. 대학의 핵심역량과 학과의 전공역량
- ⑦ 교육과정 개발과 개편의 차이는 전공교과목의 30% 이상 변경 시에는 “개발”, 전체 전공교과목의 30% 미만 변경 시에는 “개편”으로 본다.
- ⑧ 교육과정 개발(개편)은 다음 학년도 교육과정심의 전에 제출할 수 있도록 일정을 편성하여야 한다.
- ⑨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과의 연계성과 차별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을 개발(개편)한다.

제4조(교육과정 편성)

- ① 교육과정은 교양교육과정과 전공교육과정으로 구분하고 역량과 연계하여 편성한다.
- ② 교양교육과정은 대학특색과목, 학부교양교육, 기초교양교육, 소양교양교육으로 편성한다.
- ③ 전공교육과정은 전공이론 및 전공실습으로 편성한다.
- ④ 교양교육과정은 직업기초능력과 핵심역량을 함양하고 윤리관 확립을 통한 직업기초직무를 성취할 수 있도록 역량기반 교과목으로 구성한다.
- ⑤ 전공교육과정은 대학의 교육목표를 수행하고 국가의 산업동향과 지역의 산업체 요구분석을 통해 도출된 각 전공의 핵심 직무를 성취할 수 있도록 현장실무 및 역량 기반 또는 그에 준하는 교과목으로 구성한다.
- ⑥ 법령에 명시된 교과목은 관련 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구성한다.
- ⑦ 각 계열(전공) 및 (학)과의 교육과정은 직무 능력을 달성할 수 있는 이수체계에 맞춰 편성되어야 하며, 대학의 핵심역량과 교육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편성한다.
- ⑧ 기타 교육과정 개발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지침」에 따른다.

제5조(직업기초 및 기초학습능력 지원)전문직업인으로서의 인성과 교양을 함양하기 위하여 대학의 사명과 교육목표에 부합하는 교양과목, 전공교과목을 지원하고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 ① 계열(전공) 및 (학)과는 본교의 교육목표 및 직업교육과 산업체 요구가 반영된 역량기반 교육과정 개발을 위하여 교육과정 개발위원회를 둔다.<개정 2025.12.01.>
- ② 역량기반 교양 교육과정은 교양교육과정운영위원회 및 교육과정심의위원회에서 개발 및 운영한다.<개정 2025.12.01.>
- 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위원장은 계열의 전공장 또는 학과장이 되고, 위원은 교원 및 산업체 실무전문가로 한다.
- ⑤ 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역량기반 교육과정 개발 및 역량기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평

가와 개선이며, 기타 교육과정에 관한 제반사항에 참여할 수 있다.

제7조(교육과정 평가 및 환류)

- ①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계열(전공) 및 (학)과별로 역량기반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평가와 개선사항을 반영한 자체평가 및 CQI 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
- ② 계열(전공) 및 (학)과는 자체평가 및 CQI 결과보고서를 통해 전체 교육과정의 교육목표와 부합되었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개선사항을 차기 년도 역량기반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반영한다.
- ③ 역량기반 교육과정 개발, 개편, 변경 시 외부환경 및 교육수요자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과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육과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후 총장이 결정한다.

부 칙(2020.10.26.)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12.01.)

2. (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12월 01일부터 시행한다.